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7
----------	-----

제출년월일 : 2000. 8.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도시계획법 개정(2000.1.28)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보완 정비하여 도시계획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및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골자

- 상위법 적용 조문정리
 - 도시계획법 제75조내지 제77조의2 → 법 제85조 내지 제88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3 → 시행령 제24조제3항 내지 제4항
- 위원회 구성조정
 - 위 원 회 : 22인이내 → 20인내지 25인이내
 - 소위원회 : 5인이상 7인이하 → 5인내지 9인이내
-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법에 맞추어 조정(안 제4조)
 - 현행 조문중 제2호를 삭제하고 심의 및 자문사항 구체적 명시 추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과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계획안과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자문
 - 기타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과 도시계획과 관계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현행 조문의 미비점 보완
 -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안 제6조제3항)

→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안 제11조제1항)

→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당해 도시계획의 결정과 관계되는 사항(안 제11조제2항)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관련사항

○ 조 제목 변경

- 제7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 제8조(회의) → 제8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3. 의안전문 : 따로붙임

4. 관계법령 : 따로붙임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75조 내지 제77조의2”를 “제85조 내지 제88조”로 하고, “충청북도도시상임기획단”을 충청북도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과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2.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계획안과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자문
3. 기타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과 도시계획과 관계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5조제1호중 “제7조의3”을 “제24조제3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22인이내”를 “20인이상 25인이내”로 하고, 제3항중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회의”를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로 하고, 제1항의 “회의를”을 “회의는”으로, “인정할 때에는”을 “인정할 경우”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위원회”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중 “5인이상 7인이하”를 “5인이상 9인이하”로 하고, 제4항중 “소위원회는”을 “회의는”으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중 “소위원회의”와 제5항중 “소위원회에”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제1항중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를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중 “당해 도시계획의 결정과 관계되는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관련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충청북도도시상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도시계획위원회</p> <p>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 3.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p>제5조(심의배제사항)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3 각 호의 규정된 경미한 사항 2. (생략) <p>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제1조(목적)----- 제85조 내지 제88조----- -----충청북도도시계획상업 기획단----- ----- -----</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도시계획위원회</p> <p>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과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2. 도지사가 일정한 도시계획과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자문 3. 기타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과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p>제5조(심의배제사항)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제24조제3항 내지 제4항 ----- ----- 2. (현행과 같음) <p>제6조(구성)①----- ----- 20인이상 25인이내 ----- 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위원은 도의회의원 및 도의 관계 실, 국장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도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p> <p>④(생략)</p> <p>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③ (생략)</p>	<p>③-----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p> <p>④(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③(현행과 같음)</p>
<p>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를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p>	<p>제8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 인정할 경우 ----- -----</p> <p>②(삭제) ----- -----</p> <p>③(삭제) ----- -----</p>
<p>제9조(소위원회) ① (생략)</p> <p>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5인이상 7인이하 위원으로 한다.</p> <p>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④소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소의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의결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9조(소위원회) ①(현행과 같음)</p> <p>②(삭제) ----- -----5인이상 9인이하 -----</p> <p>③(삭제) ----- -----</p> <p>④회의는 ----- -----</p> <p>⑤(삭제) ----- -----</p>
<p>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p> <p>② (생략)</p> <p><신설></p>	<p>제10조(간사 및 서기)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p> <p>②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도시계획의 결정과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p> <p>②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관련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